

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
육성사업 출연 동의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6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구미시에서는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및 핵심기술 개발 및 지원을 통한 지역 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內 3D디스플레이기술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
- 나.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17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자·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개요

- (1) 대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(2) 대 표 : 남유진
- (3) 소재지 :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
- (4) 출연예정액 : 금520,000천원(현물 394,000천원, 현금 126,000천원)

※ 5차년도('16. 7월 ~ '17. 12월) 소요예산 중 시비 매칭 금액

나. 주요 사업

(1) 사업명 :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

(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)

(2) 사업기간 : 2012년 7월 ~ 2017년 12월 (66개월)

(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

(금오테크노밸리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지원센터)

(4) 총사업비 : 275.7억원 [국비(지특)177.3, 도비25.89, 시비60.41, 민자12.1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	
	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
계	275.7	47.6	76.08	46.56	74.54	30.92
국 비	177.3	11.9	39	38.2	66	22.2
도 비	25.89	15.09	9.27	0.48	0.51	0.54
시 비	60.41	19.45	25.57	5.06	5.13	5.2
민 자	12.1	1.16	2.24	2.82	2.9	2.98

(5) 추진주체 : 산업통상자원부, 경상북도, 구미시

(6) 주관기관 : 구미전자정보기술원

(7) 사업내용

-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지원센터 및 공용장비 구축
- 상용화 기술개발 기업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

(8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1. 11 : 예비타당성 심사 및 국책사업 확정
- 2012. 7 :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지원센터 구축사업

- 2013. 12 : 센터 리모델링 준공 완료
- 2014. 3 :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지원센터 개소식
- 2015. 3 : 3차년 기업지원사업 완료(52건, 계획대비 104%)
- 2016. 3 : 4차년 기업지원사업 완료(56건, 계획대비 104%)
- 2016. 8 : 4차년 구축 장비(공정 2종, 신뢰성 2종) 입고
- 2016. 8 : 5차년 사업 협약 체결
- 2017. 6 : 5차년도 장비 구축 예정(4종)
- 2017. 8 : 기업지원사업 수행 예정(44건, 4억원 지원)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(1) 디스플레이 산업의 시장포화에 따라 3D 디스플레이 신산업 창출을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
- (2) 구미의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기술 기반과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의 동력을 접목하여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고용 창출에 이바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(2)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

(3)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
(4)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

(5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2017년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주요사업 실적

주요사업 실적

□ 기반구축사업(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실용화지원센터)

○ 센터건축개요

- 건축기간 : 2013. 1월 ~ 2013. 12월
- 사업비 : 6,938백만원(국비 2,459, 도비 1,961, 시비 2,518)
- 위치 : 구미시 금오대로 350-27 금오테크노밸리 內
- 부지면적 : 15,103m², 건축면적 : 1,803m², 연면적 : 4,800m²
- 규모 : 지하1층 / 지상4층
- 주요시설 : 시제품제작시설(부품, 소재), 연구소지원시설, 연구개발지원시설, 전시·홍보시설, 사무·편의 시설 등

○ 센터 건축(리모델링) 완료('13. 12월) 및 개소식('14. 03월) 개최

3D디스플레이
부품소재 및 3D
융합 부품산업의
활성화를 위한
기술개발 및 기업
지원 핵심거점
센터 구축

4F 전시실, 미디어실증평가실
3F 산연공동연구실, 회의실, 자료실
2F 센터사무실, 특성 및 신뢰성 평가실
1F 기초공정실형실 및 신뢰성 평가실
B1F 클린룸(시제품제작), 기계 및 전기실



□ 장비구축

○ 3D 디스플레이 산업/기술 동향에 맞는 17종(110억원)의 장비 구축

* 공정장비 5종, 신뢰성평가장비 12종

○ 장비활용

- 1차년도 구축장비 실적 : **13개 기업, 281 시간**
- 2차년도 구축장비 실적 : **14개 기업, 1,100시간**
- 3차년도 구축장비 실적 : **17개 기업, 3,010시간**
- 4차년도 구축장비 실적 : **67개 기업, 5,800시간**

○ 4차년도 장비 4종(50억원) 구축 완료

- 용액공정형 마이크로 패턴형성기
- 박막패턴 정렬시스템
- 유기전자소자 수명시스템
- 유기디스플레이패널 수명시스템

□ 기업지원

○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기업지원에 중점

○ 지원 규모(총액 17.5억원)

- 1 ~ 4차년도 13.5억원 지원 완료
- 5차년도 4억원 지원(44건 지원 예정)

○ 시제품제작, 특허출원, 인증 및 테스트지원, 현장애로기술지원 등



< 대표 지원제품 >

○ 지원 성과

- 3차년도 실적('15년 12월 기준)

⇒ 지원 52건, 매출증대 50억원, 신규인력 고용 135명

- 4차년도 실적('16년 06월 기준)

⇒ 지원 56건, 매출증대 139.5억원, 신규인력 고용 32명

□ 인력양성사업

○ 3D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산업 글로벌 선도인력 양성

○ 기업 현장인력 대상으로 사전수요조사를 통한 기업맞춤형 교육 실시

교육 항목	교육프로그램 내용
○ 글로벌 선도 인력 양성	○ 부품소재 핵심기술 이론 교육 ○ 패넬공정 및 평가기술 실습 교육
○ 기업맞춤형 현장인력 재교육	○ 3D디스플레이 패넬 및 부품소재 기초 과정 교육 ○ 기업체 요구에 맞는 현장 출장 교육

○ 1~3차년도 총 14회, 341명 글로벌 선도인력 양성

○ 4차년도 인력양성 사업 진행 : 총 8회, 147명

-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이론/실습 1차 교육(16년 2월 24일~26일)

- 마이크로디스플레이 이론/실습 2차 교육(16년 4월 14일~15일)

- 기업맞춤형 현장 출장교육 4회(15년 7월~16년 1월)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

제3조 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

□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

제11조 (산업기술개발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(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. 이하 “산업기술개발사업”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, 부품·소재 및 장비·

설비(플랜트를 포함한다) 기술

2.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

3.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,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

4.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·시스템 기술

5. 에너지 절약 및 신·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·자원기술

6.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「민·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

7. 디자인·브랜드·표준 관련 기술, 유통·전자거래 및 마케팅·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

8.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

9. 「산업발전법」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·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

10. 삭제 [2013.3.23 제11690호(정부조직법)]

11.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

12.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

13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(이하 "주관연구기관"이라 한다)

2.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(이하 "참여기관"이라 한다)

③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관·단체 또는 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과제기획·관리 및 평가(이하 이 조에서 "기획등"이라 한다)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(이하 "전담기관"이라 한다)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2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·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.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,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
2.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이 대행하는 기획등에 대한 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산업기술개발사업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

제19조 (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(이하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이라 한다)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
2. 산업기술 연구장비·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
3. 연구장비·시설·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(集積化) 촉진
4.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·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·관리 및 활용의 촉진
5. 산업기술의 표준화, 디자인·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
6.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·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
7.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, 대학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,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(이하 "주관기관"이라 한다)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,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③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하여는 제11조(제1항은 제외한다)·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"주관연구기관"은 "주관기관"으로, "산업기술개발사업"은 "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"으로 본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20조 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
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 (재원의 조달) ① 기술원의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한다.

1.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
 2.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
 3. 대학, 연구소,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
 4. 그 밖에 자산 운용 및 사업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
- ② 시장은 기술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·보조할 수 있다.

소관 실 · 과		투자통상과
입 안 자	과 장	유익수
	담 당	권기열
	담 당 자	이지영 (480-6143)